

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건 설 산 업 과)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연 월 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특례 기한을 조정코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수수료 특례규정(부칙)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조정(부칙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2. 1. ~ 12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사항 없음

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토교통부령 제852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
규칙 부칙 제3조 중 “2022년”을 “2024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국토교통부령 제852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(수수료에 관한 특례) 제8조에도 불구하고 <u>2022년 12월 31일까지</u> 기능 등급확인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는 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.	국토교통부령 제852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(수수료에 관한 특례) ----- ----- <u>2024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 -----.